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II. 검토의견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이 은 정)